

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

공 고 제 호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(직인)

시행자 (점용·사용자)	상호 및 명칭			
	대표자 (성명)		주소	
소하천명				
공사 (점용·사용) 개요	위치			
	면적	m ²	폐천부지(廢川敷地) 예상 면적	m ²
	기간			
	목적 및 사유			

열람서류

- 1. 실시설계도서
- 2. 위치도(축척 5만분의 1 지형도)